

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98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.05. .

제 출 자 : 안산시장

□ 개정이유

- 국민들이 지방세 징수 규정을 알기 쉽도록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「지방세징수법」을 분리제정하고 「지방세기본법」이 전부개정(법률 제14474호, 2016.12.27.공포, 2017.3.28.시행)됨에 따라 이 조례 중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은 「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」를 제정하는 한편, 이 조례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- 「지방세기본법」의 분법에 따라 「지방세징수법」으로 이관된 규정 및 조례에 따로 규정할 실익이 없는 규정 삭제(현행 제7조, 제2조)
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6조에 지방세 부과·징수의 위임·위탁 대상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규정 정비(안 제2조)
- 이륜자동차의 등록사무 위탁 및 서류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내용을 구체화 함 (안 제3조, 제4조)

□ 개정조례안 : 불임 1

□ 신구조문대비표 : 불임 2

□ 관계법령발췌서 : 불임 3

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 없음

□ 예산수반사항 : 해당 없음

□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(보완) 있음

- 입법예고 : 2017. 3. 30. ~ 2017. 4. 19.(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붙임4
- 방침결정문 : 붙임5

입법예고 보완 의견 및 검토결과

보완요구기관	입법예고안	보완요구사항	검토의견	반영여부
행정자치부	<p>제3조(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「자동차등록령」 제5조제2항 및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안산시(이하 "시"라 한다)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사무(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「지방세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·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(이하 "자동차세"라 한다) 신고사무를 자동차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「자동차등록령」 제5조제2항 및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99조제1항에 따라 시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·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.</p>	<p>제3조(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8조 및 「자동차등록령」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안산시(이하 "시"라 한다)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(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「지방세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다른 시·군·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이륜자동차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담당기관(「자동차관리법」제48조) 이므로 이에 대해 규정 ○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외 변경·폐지신고에 따라 취득세, 등록면허세, 자동차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"사용신고"를 "신고사무"로 용어 변경 ○이륜자동차 담당기관은 시·군·구이고 해당 조례에서 시·도지사에게 이에 대한 신고사무를 위탁하고 있으므로 반영 ○업무위탁에 따른 서류 통지기간을 10일로 일원화 <p>※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-599(2017.4.10.) 지방세자치법규 기본안 보완사항 송부</p>	반영

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세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부과·징수 등의 권한 위임)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(이하 “도세”라 한다)와 안산시 시세(이하 “시세”라 한다)의 부과·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·독촉장·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, 도세와 시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, 차량등록사업소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. 다만, 시세의 부과·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제3조(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8조 및 「자동차등록령」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안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(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「지방세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다른 시·군·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.

제4조(서류송달의 방법)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,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.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,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 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·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

하게 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·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,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5조(교부금전의 예탁) 채권자,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안산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.

제6조(지방세심의위원회)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안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안산시 시세 조례」 제3조 중 “「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」 제3조”를 “「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」 제2조”로 하고, 「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」 제6조 중 “「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」 제47조”를 “「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」 제6조”로 한다.

② 「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」 제2조 제2호 중 “「지방세기본법시행령」 제67조”를 “「지방세징수법 시행령」 제31조”로 하고, 같은 조례 제7조제1항 중 “「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」 제8조”를 “「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」 제6조”로 하며, 같은 조례 제11조제3항 중 “「지방세기본법시행령」 제65조”를 “「지방세기본법시행령」 제43조”로 한다.

③ 「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」 별표2의 세정과 관련법령란 중 “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”를 “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제2조”로 한다.

소관 실·과		세 정 과
임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세정과장 하 순 자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세정담당 배 순 철
	담당자 성명·전화	김 영 란 (행정 2198)

< 불임 2 >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 이 조례는 「지방세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2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안산시 시세(이하 “시세” 라 한다)의 부과·징수에 관하여 「지방세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,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, 「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	<p>(삭 제)</p>
<p>제3조(부과·징수사무의 위임 등)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위임받은 도세와 시세의 부과·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·독촉장·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, 도세와 시세의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차량등록부서의 장, 구청장, 동장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.</p>	<p>제2조 (부과·징수 등의 권한 위임)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(이하 “도세”라 한다)와 안산시 시세(이하 “시세”라 한다)의 부과·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·독촉장·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, 도세와 시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, 차량등록사업소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. 다만, 시세의 부과·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</p>

제4조(자동차 이전·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) ① 「자동차등록령」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시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「지방세법」 제128조 및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125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사무를 처리하는 해당 등록관청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「자동차등록령」 제5조제2항에 따라 시 관할 이외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신고 서류를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.

제5조(서류송달의 방법)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,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.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등록증은 교부,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
② 영 제11조에서 “조례에 정하는 방법”이란 시장이 등장 또는 통·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·위탁하는 것을

우에는 그에 따른다.

제3조(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8조 및 「자동차등록령」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안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(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「지방세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다른 시·군·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.

제4조(서류송달의 방법)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,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.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등록증은 교부,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12조

말한다. 통·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에 따라 동장 또는 통·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·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,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6조(교부금전의 예탁) ① 법 제72조에 따라 교부할 금전 중 채권자, 납세자, 그 밖의 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안산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, 납세자, 그 밖의 자에게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.

제5조(교부금전의 예탁) 채권자,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안산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.

제7조(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)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“성실납부자”란 체납발생 직전연도까지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(취득세,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, 재산세,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)를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.

제8조(지방세심의위원회) 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안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

(삭 제)

제6조(지방세심의위원회) 법 제147조 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안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.

제9조(생 략)

제7조(현행 제9조와 같음)